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eiak.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01.0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02.0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본문]

####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 제3부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제4부 요약재무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경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 칭

명 칭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61146)				
(종류) 클래스	Class A1	Class C1	Class C2	Class C-W	Class C-T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1147	72390	68820	79078	17167

2. 모집예정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펀드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분 류:

- 1)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삼성화재빌딩 7층 (대표전화: 02-3788-0550)

가. 운용관련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국내주식	60%이상 (가치주에의 투자 5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국내 주권상장법인에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가. “가치주”란 위에서 정의된 “주식” 중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업종평균 이하이거나 시장전체 대비 낮은 주식을 의미
②	국공채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국공채”라 한다)
③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KOSPI 10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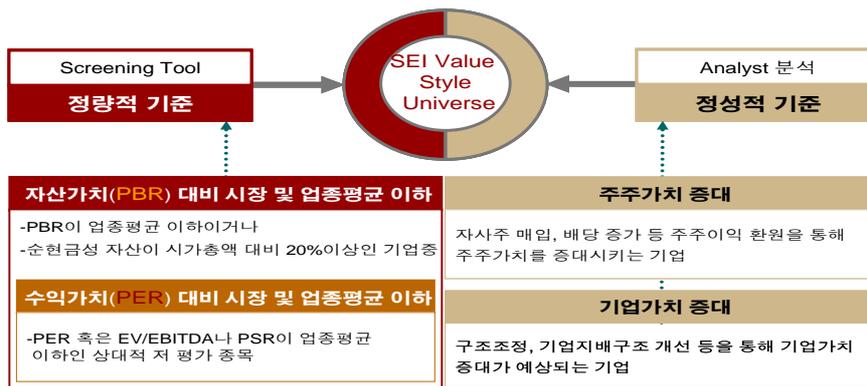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투자가능비중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 비교지수: KOSPI 100%

-엄격하고 객관적인 가치주 유니버스 선정기준: 저PBR, 저PER



- \*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수치
- \*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
- \* PSR(Price Sales Ratio):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눈 수치
- \* EV/EBITDA(Enterprise Value/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가치를 세금 및 이자지급전 이익으로 나눈 수치

나. 위험관리 전략

- 주식 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

-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자산배분위원회(AAC)에 의해 결정

### 3. 수익구조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내재가치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히 저평가 되어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sup>주1)</sup>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 <sup>주2)</sup>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 <sup>주2)</sup> 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 <sup>주2)</sup> 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고위험자산 <sup>주2)</sup> 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 적격 등급(BBB-이상)의 국내 채권등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MMF(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혹은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상세 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 집합투자업자가 판단 분류,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  
 주2)고위험자산: 주식, 후순위채, 투기등급(BB+ 이하)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6.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2010.01.08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김재동	1962	상무	12개(팀운용)	2,272억 (팀운용)	-미 Univ. of Rochester, MBA -SH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세이에셋코리아(주), 주식운용본부(2008.8~)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규모: 299억	개수: 1개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로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1)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연도	최근 1년 2009.01.09~ 2010.01.08	최근 2년 2008.01.09~ 2010.01.08	최근 3년 2007.01.09~ 2010.01.08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6.10.17~ 2010.01.08
투자신탁 전체	50.18	-5.45	10.44		11.94
Class A1	50.15	-5.48	10.41		11.92
Class C1	49.08	-6.18			-7.82
Class C2	-19.73	-30.54			-18.39
Class C-W	51.59				1.91
비교지수	40.60	-3.65	7.34		7.14

주1) 비교지수: KOSPI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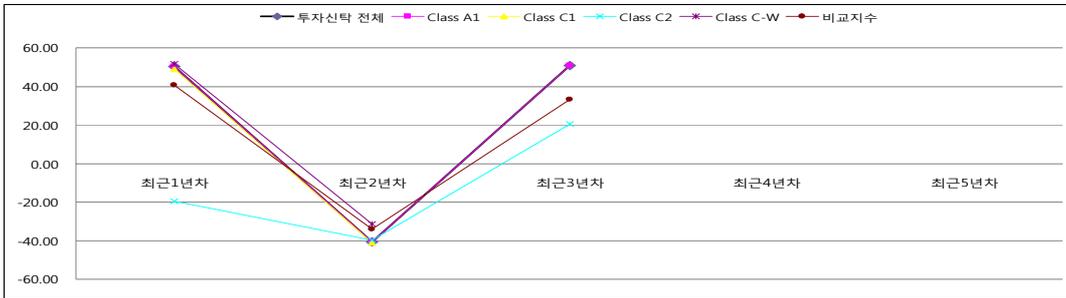
(단위: %)

연도	최근 1년차 2009.01.09 ~ 2010.01.08	최근 2년차 2008.01.09 ~ 2009.01.08	최근 3년차 2007.01.09 ~ 2008.01.08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전체	50.18	-40.48	50.69		
Class A1	50.15	-40.50	50.68		
Class C1	49.08	-40.96			
Class C2	-19.73	-39.90	20.59		

Class C-W	51.59	-31.57		
비교지수	40.60	-33.98	33.22	

주1) 비교지수: KOSPI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1	Class C1, Class C2, Class C-W, Class C-T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sup>1)</sup>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1회

주1)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Class A1	Class C1	Class C2	Class C-W	Class C-T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65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연 1.750%	연 0.100%	연 0.000%	연 0.050%	
신탁업자 보수	연 0.03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14%					
기타비용 <sup>1)</sup>	연 0.014%	사유발생시				
<b>총보수·비용비율<sup>2)</sup></b>	<b>연 1.708%</b>	<b>연 2.458%</b>	<b>연 0.808%</b>	<b>연 0.708%</b>	<b>연 0.758%</b>	-
증권거래비용 <sup>3)</sup>	연 0.320%	연 0.313%	연 0.306%	연 0.315%	연 0.320%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0.01.08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설정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 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0.01.0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1	270,903	640,903	1,048,829	2,261,065
Class C1	250,477	789,629	1,384,044	3,150,474
Class C2	81,374	256,532	449,644	1,023,517
Class C-W	71,126	224,224	393,014	894,611
Class C-T	76,055	237,974	413,913	923,32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율 0%,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정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 용
계산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계산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지하지 아니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고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seiak.com">www.seiak.com</a>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의 인터넷 홈페이지

(2) 매입 및 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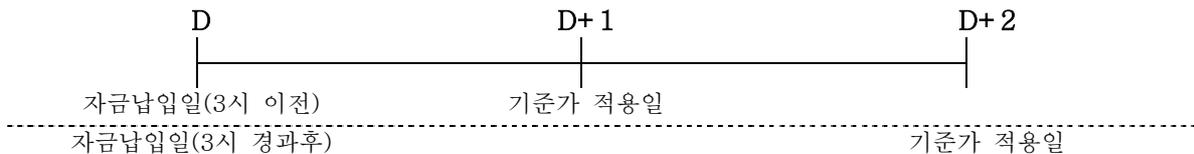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②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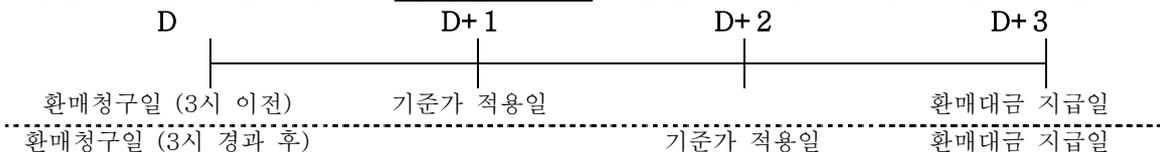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09.10.16	2008.10.16	2007.10.16
I. 운용자산	141,950,742,194	136,644,924,758	465,890,143,400
증권	135,516,194,710	124,625,320,870	441,614,837,250
현금 및 예치금	34,537,244	19,603,888	75,306,150
기타운용자산	6,400,010,240	12,000,000,000	24,200,000,000
II. 기타자산	358,066	167,630,497	14,696,115,040
자산총계	141,951,100,260	136,812,555,255	480,586,258,440
II. 기타부채	1,112,306,268	1,709,477,894	14,158,996,680
부채총계	1,112,306,268	1,709,477,894	14,158,996,680
I. 원본	179,264,258,098	229,302,693,546	268,796,291,104
II. 수익조정금	15,925,559,990	21,598,662,745	103,506,263,355
III. 이익잉여금	-54,351,024,096	-115,798,278,930	94,124,707,301
자본총계	140,838,793,992	135,103,077,361	466,427,261,760
I. 운용수익	42,100,008,298	-111,577,255,190	97,299,300,448
이자수익	154,132,538	702,800,479	618,514,004
배당수익	3,042,666,290	5,216,686,800	1,221,038,550
매매/평가차익(손)	38,896,488,828	-117,622,814,040	95,266,688,105
기타이익	6,720,642	126,071,571	193,059,789
II. 운용비용	2,251,416,209	4,221,023,740	3,174,593,147
관련회사보수	2,226,528,431	4,183,226,348	3,159,284,112
기타비용	24,887,778	37,797,392	15,309,035
III. 당기 순이익	39,848,592,089	-115,798,278,930	94,124,707,301
* 매매회전율	168	168	45
* 매매수수료	421,299,210	736,955,040	733,674,920